

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I. 개요

1. 제안 경위

- 가. 제 출 자: 서울특별시
- 나. 의안번호: 제1100호
- 다. 제출일자: 2016. 4. 7.
- 라. 회부일자: 2016. 4. 12.

2. 제안사유

- 가. 양천주민편익시설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시설로,
- 나.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증축 및 리모델링 중인 시설로서 준공예정일에 맞추어 위탁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 개요

- 시설명 : 양천주민편익시설
- 소재지 : 양천구 목5동 900
- 시설규모 :
 - 변경전 : 지하3층/지하2층, 연면적 3,921.42㎡
 - 변경후 : 지하3층/지하3층, 연면적 5,841.52㎡
- 시설용도 : 근린생활시설, 운동시설
(골프연습장, 수영장, 헬스장, 독서실 등)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6.7.1~2019.6.30)
- 위탁사무 :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
 - 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
 -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
- 소요예산 : 운영비 지원 없음(수익창출형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다.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필요성
 -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양천주민편익시설의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가 필요함
- 기대효과
 - 서울시 예산지원 없이 수익금만으로 운영되므로 예산절감
 - 전문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향상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주민편익시설의 관리·운영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II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본 동의안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하여, 현재 증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양천주민편익시설의 운영 관리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4곳의 자원회수 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이용하고 있으며,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3곳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민간위탁하고 있으며, 노원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음.

<표 1>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현황

시 설	양천주민편익시설	노원청소년수련관	강남주민편익시설	마포주민편익시설
개관일	'99.09.01.	'98.01.22.	'02.01.28.	'10.02.01.
수탁기관	-	(재) 푸른나무 청예단	(사)흥사단	마포구시설관리공단
민간위탁 유형	수익창출형	예산지원형	수익창출형	수익창출형
위탁기간	-	'15.01.01. ~'17.12.31.	'14.01.28. ~'17.01.27.	'15.12.30. ~'18.12.29.
규 모 (연면적)	5,841.52㎡ (지하 3, 지상 3)	8,215㎡ (지하 2, 지상 6)	9,716㎡ (지하 1, 지상 3)	4,958㎡ (지하 2, 지상 4)
용 도	수영장, 헬스장, 골프장, 독서실 등	수영장, 헬스장, 에어로빅실 등	수영장, 헬스장, 독서실 등	골프연습장, 헬스장, 독서실 등

- 양천주민편익시설은 99년 4월에 준공되어, 2014년 10월까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었으나, 2014년 12월부터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를 시작하여 오는 6월말 준공예정임.
- 본 동의안은 주민편익시설의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.
- 다만, 본 시설은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이용료 수입만으로 운영¹⁾하도록 하고 있으나, 주민편익시설은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민간위탁하는 것이 원칙²⁾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, “수익 창출형” 민간위탁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1)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사업은 사용수익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

2)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.15

관 계 법 령

「지방자치법」

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- 제20조(주민편익시설의 설치)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(出捐)할 수 있다.
- 제22조(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)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.
-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2.3.>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, 지원기준·방법, 공개내용·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2.3.>

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

제7조(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) ①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외의 주민이 이용토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9.30.>

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,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해당 주민편익시설의 관리·운영비 및 예상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등과 비교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9.30., 2010.1.7.>

1.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
2.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.

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」

제3조(주민지원계정의 용도) ① 주민지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7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지원 사업

2.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내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(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)

3.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비 및 월주택임대료·의료비·주민편익시설 이용료·후생복지비 등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

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하되, 지원대상은 지원결정일 현재 거주자로 한정한다. <개정 2013.8.1.> [전문개정 1999.6.30.]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<참고자료 1>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현황

시 설	양천주민편익시설	노원청소년수련관	강남주민편익시설	마포주민편익시설
위 치	양천구 목동서로 20	노원구 덕릉로 70길 99	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(일원동)	마포구 월드컵북로 44길 40
개관일	'99.09.01.	'98.01.22.	'02.01.28.	'10.02.01.
수탁기관	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중	(재) 푸른나무 청예단	(사)흥사단	마포구시설관리공단
민간위탁 유형	수익창출형	예산지원형	수익창출형	수익창출형
위탁기간	'14.12. ~'16.06.	'15.01.01. ~'17.12.31.	'14.01.28. ~'17.01.27.	'15.12.30. ~'18.12.29.
규 모 (연면적)	5,841.52m ² (지하 3, 지상 3)	8,215m ² (지하 2, 지상 6)	9,716m ² (지하 1, 지상 3)	4,958m ² (지하 2, 지상 4)
용 도	수영장, 헬스장, 골프장, 독서실 등	수영장, 헬스장, 에어로빅실 등	수영장, 헬스장, 독서실 등	골프연습장, 헬스장, 독서실 등
홈페이지	-	http://www.youthcenter.or.kr	http://www.ykasports.net	http://www.mpcc.or.kr
전화번호	-	02-3391-4141	02-3412-2171	02-306-3280
주관부서	자원순환과	청소년담당관	자원순환과	자원순환과
사 진				